

『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
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공동자원화를 통한 환경개선 및 경종농가와 연계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대두되고 있음
- 이에, 구미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양질의 퇴·액비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건립하고자
-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－ 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A	수질오염 방지시설	분뇨 처리 시설	산동면 성수리 1026번지 일원	-	증)19,380. 6	19,380.6		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

· 결정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결 정 내 용	결 정 사 유
A	수질오염 방지시설 (분뇨처 리시설)	수질오염방지시설 (분뇨처리시설) 신설 $A=19,380.6\text{m}^2$	구미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양질의 퇴·액비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가축분 노 공동자원화시설을 건립하고자 시설 결정함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

5. 검토의견

□ 본 ‘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’의 건은,

- 구미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양질의 퇴·액비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가축분노 공동자원화시설을 건립하고자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을 받으려는 것임
- 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관련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,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로 수질오염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